

조례안예고

창원시의회 공고 제2026 - 75호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지방자치법」 제77조 및 「창원시의회 회의 규칙」 제20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15일

창원시 의회의장

1. 자치법규명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2. 제정이유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본 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 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창원시의회의장(참조: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51435 /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51

창원시의회 의사입법담당관 입법지원팀(전화:055-225-5374 FAX:055-225-4743)

라. 의견제출 방법: 우편, 팩스, 이메일(kimhk7@korea.kr), 직접 방문 등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김우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91
----------	----

발의연월일 : 2026. 10. 15.

발 의 의 원 : 김우진 · 김원일 · 남재욱 · 문순규 · 박강우
박연정 · 박영주 · 박찬열 · 배명갑 · 서명일
이무식 · 전홍표 · 지상록 · 진형익
하경석 의원(15명)

1. 제안이유

친환경농업의 생산 기반을 강화하고 안전한 농축산물 공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친환경농업의 기본 방향과 친환경농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안 제1조 및 제2조)

나. 시장의 책무 및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관한 사항.(안 제3조 및 제4조)

다.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라. 친환경농업 육성 지원에 관한 사항.(안 제6조)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창원시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창원시의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농업의 육성
성과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안전한 농축산물의 공급 촉진
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 제2조에 따른다.

제3조(시장의 책무) 창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친환경농업의 안
정적인 성장·발전과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
· 시행해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친환경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다.

제5조(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의 수립 등) ①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을
수립·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제

1항에 따라 설치된 창원시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은 친환경농업 실천계획 수립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그 밖의 법인·단체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친환경농업 육성 지원) 시장은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하여 국가·경상남도가 권장하는 사업
2. 친환경농축산물 인증 확대 사업
3.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 유통 및 수출 활성화 사업
4. 친환경농축산물의 생산비 보전을 위한 사업
5.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농자재 구입 지원사업
6. 친환경농업기술의 개발 및 보급사업
7. 친환경농업 안전성·환경 가치 홍보 사업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친환경농업과 관련된 사업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친환경농업”이란 친환경농어업 중 농산물·축산물·임산물(이하 “농축산물”이라 한다)을 생산하는 산업을 말한다.
2. “친환경농축산물”이란 친환경농업을 통해 얻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 가. 유기농산물·유기축산물 및 유기임산물(이하 “유기농축산물”이라 한다)
 - 나. 무농약농산물
3. “유기식품”이란 유기농축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4. “유기식품등”이란 유기식품 및 비식용유기가공품(유기농축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사용하는 것으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5. “유기농업자재”란 유기농축산물을 생산, 제조·가공 또는 취급하는 과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허용물질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만든 제품을 말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는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기본계획과 정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 및 농어업인 등의 자발적 참여를 촉진하는 등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을 진흥시키기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관할구역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친환경농어업·유기식품등·무농약농산물·무농약원료가공식품 및 무항생제수산물등에 관한 육성정책을 세우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8조(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 ① 시·도지사는 육성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친환경농어업 실천계획(이하 “실천계획”이라 한다)을 세우고 시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민간단체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시·도 실천계획을 세웠을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구청장”이라 한다)에게 알려야 한다.

③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실천계획에 따라 친환경농어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시·군·자치구 실천계획을 세워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약칭: 농업식품기본법)

제15조(정책심의회) ① 농림축산식품부에 중앙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고, 시·도에 시·도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두며, 시·군 및 자치구에 시·군·구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는 기본계획, 시·도계획 및 시·군·구계획,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의 발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발전계획의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2. 제17조에 따른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에 관한 연차보고서
3. 그 밖에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정책 등에 관하여 위원장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③ 제1항에 따른 각급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회의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